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른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를 “따라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때의”를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른 나트륨”을 “따라 나트륨”으로, “때의”를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으로 한다.

별표 2 II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를 10% 이상(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거나 도안·사진 등으로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병마개의 제품과 소비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인(刻印: 새김도장) 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6 제4호 중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는 부당한”을 “부당한”으로, “경우에는”을 “영업자는”으로 한다.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 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광고의 즉시 중지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등) ① (생략)	제5조(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 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따라 글씨 크기·표시장소 등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영양표시) ① ~ ③ (생략)	제6조(영양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생략)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 따라 나트륨 -----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